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용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65

발의연월일: 2020. 7. 13.

발 의 자:고용진・김수흥・김경협

기동민・김두관・우원식

양향자 · 정성호 · 김주영

양경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2 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면서 8 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.

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 중 하나인 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 제 혜택을 정비해야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.

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 등록 기한을 종전 2022년 12월 31일에서, 앞으로는 2020년 12월 31일로 변경하려는 것임(안 제97조의3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0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아 혂 개 정 제97조의3(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제97조의3(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 례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례) ① ---------<u>2020년</u> 12월 31일----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 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 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 우 그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장 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"이라 한 다)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. 다만.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 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 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. 1. • 2. (생 략) 1. · 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생 략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